

기획재정부령 제 호

**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**

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장이”를 “장 또는 「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”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조제1항에 따른”을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내국신용장등) 법 제5조제3항에서 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.</p> <p>1. 외국환은행의 <u>장이</u>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구매확인서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12조(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)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”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<u>제2조제1항에 따른</u>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	<p>제5조(내국신용장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장 또는 「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</u> ----- 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) ----- ----- ----- <u>제2조의 규정</u>에 의한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